- 지원 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 \* 지원 시 고려 사항

- ① 관리인력 확보의 적정성 및 향후 소모품 교체 등 장비 관리 계획
- ② 거주 인원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노력
- ③ 설치 규모
- ④ 구성인원의 인구학적 특성
- ⑤ 기타 지자체 장이 우선 고려하는 보건 정책 목표 등
- O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건전지 교환에 대한 지원
- 기존 동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기금으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패치, 건전지 교환 지원 가능
- 지원 기준을 지역 내에서 자체 수립하고,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

#### \* 지원 시 고려 사항

- ① 실제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사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② 미사용 교체 시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물품 자체 내구연한 경과 여부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여부(http://portal.nemc.or.kr 또는 관리대장 확인)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여부 등

## □ 예산 지원, 집행 절차

- 각 지역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조사 후 지원이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한 수요파악,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청
- O 예산을 교부받은 지역에서는 시·도별 일괄 조달 등의 방법을 통해 단가 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시(매년 12월 31일) 각 지역별 집행 내역을 [붙임10]의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다음연도 1.3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 붙임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18 171 EXIGIO
구 분		관련 규정
<b>관한 법률</b> 」 <b>제47조의2</b> (심폐소생을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u>공공</u>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유 제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1.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 조에 따른 <u>구급대</u> 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와 「의료 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 용 중인 구급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1. 일반구급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설치할수 있다. 2. 고속국도구급대: 교통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 또는고속국도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하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구 분	관련 규정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 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3. 「항공안전법」 제 2 조 제 1 호 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b>여객</b> <u>항공기</u> 및 「공항 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u>공항</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공항시설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기본법」 제3조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 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의2 제1항제1호	「선박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구 분	관련 규정
20톤 이상인 선박	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  * 20톤 이상의 '부선'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법률 제15893호, '18.12.11,
	일부개정]
6.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u>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구 분		관련 규정	
	1. 철도역사(「대도 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법」제 2조제 2호 나목에 따른 광역 철도 및 「도시 철도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시 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와의 대합실 중 연면적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 수가 1만명 이상 인 <b>대합실</b>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일 것 3.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것	
		1. "도시철도"란 도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걸선 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 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편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정의)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3. 「항만법」제2조 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u>대합실</u>	「항만법」제2조(정의)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나.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관광진흥법」 제 5 조 제 1 항 에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 분	관련 규정
따른 카지노 서 중 영업장의 전 면적이 2천자 미터 이상인 <b>카</b> <b>시설</b>	
5. 「한국마사회 제4조에 따른 <u>마장</u>	법」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 경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6. 「경륜·경정 제 5 조 제 1 형 따른 <u>경주장</u>	
7. 「형의 집행의 소용자의 처음 보호 법률」 11조에 따른 도소, 소년교5 및 구치소, 「웹 국관리법」 때 제13호에 때 외국인보호 등 처우에 관한 법에 따른 소년	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제 1. 19세 이상 수형자 : 교도소  교 2. 19세 미만 수형자 :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 구치소  4.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의 출] 경임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관련 규정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제5조 에 따른 <u>전문체</u> 육시설 중 총 관 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 <b>중앙행정기관의</b> <u>청사</u> 중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b>정부조직법」</b> 상 중앙행정기관	
10. <u>시·도의 청사</u>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청사	17개 시·도 청사	

# 붙임2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기준

구 분	주요내용	비고
크기	<ul> <li>고정형(스탠드형): 2단구조</li> <li>40cm(가로)×30cm(세로)×160cm(높이) 정도</li> <li>고정형(벽걸이형): 1단구조</li> <li>40cm(가로)×30cm(세로)×30cm(높이) 정도</li> </ul>	장비크기에 따라변경/능
재질	○ 철재 (앞면의 창은 투명아크릴 등 소재 사용)	
주요특징	○ 도난경보장치 (관리책임자 실시간 통보 기능 등)	
내용연수*	○ 본체 : 7~10년 정도 ○ 전극 및 건전지 : 2년 정도	제조사 및 규격에 따라 변경가능

\* 내용연수는 조달청고시를 참조함

### □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표시



\* ① 고정형(벽걸이형) 크기 / ②고정형(스탠드형) 크기임